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설명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올바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 가능**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보급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활용방법

<https://www.kead.or.kr/>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Korea Employment Service for the Disabled (KEAD).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KEAD logo, a search bar, and social media icons for YouTube, Facebook, and Twitter. Below the navigation bar are several menu items: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Education for Improving Awareness of Disabled People in the Workplace), '장애인지원' (Support for Disabled People), '사업주지원' (Support for Employers), '교육훈련' (Education and Training),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and '공단소개' (Introduction of the Agency). A callout box with the word '클릭' (Click) points to the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menu item.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banner with the slogan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A world where we work together, we are here.) and six service tiles: '고객의 의견을 등대로 삼겠습니다 (국민혁신제안코너)' (We will take customer opinions as our lighthouse (National Innovation Proposal Corner)), '온라인 구인구직' (Online Job Search),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제도' (Support System for Establishing Standard Employers for Disabled People), '직업능력개발훈련' (Job Ability Development Training),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Mandatory Employment System for Disabled People), and '장애인 고용장려금' (Job Creation Incentive for Disabled People), and '서식자료실' (Form and Document Room).

1. https://www.kead.or.kr 접속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클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활용방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설명

질문과 답변

교육기관 및 강사찾기

교육자료실

강사양성과정 안내

교육기관지정 안내

강사지원사업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제도 설명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제화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및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 및 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최근 공단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관이 공단을 사정하며 사업체에 연락하여 잘못된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올바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설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구분	교육 방법(택 1)	교육 자료	참고 사항	교육 증빙
직접교육	①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	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 교재 다운로드 >> 교육용 동영상 다운로드 >> 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 다운로드 >> (자체 온라인교육시스템이 있는 경우)	-	- 교육일지 다운로드 >> - 교육 참석자 명단 다운로드 >>
	② 전문 강사가 실시(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	교육기관 및 강사 찾기 메뉴 이동	-
위탁교육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 실시	-	교육기관 및 강사 찾기 메뉴 이동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구분	교육 방법(택 1)	교육 자료	참고 사항	교육 증빙
직접교육	①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	사업주 교육 진행용 PPT 교재 다운로드 >> 간이교육자료* 다운로드 >> 영문간이교육자료* 다운로드 >> 교육용 동영상 다운로드 >> 인터넷 등 원격 교육용 파일 다운로드 >> (자체 온라인교육시스템이 있는 경우)	-	- 교육일지 다운로드 >> - 교육 참석자 명단 다운로드 >>
	② 전문 강사가 실시(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	-	교육기관 및 강사 찾기 메뉴 이동	-
위탁교육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 실시	-	교육기관 및 강사 찾기 메뉴 이동	-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 가능

인쇄



담당자 : 인식개선센터 김내영 | 전화번호 : 1588-1519 FAX : 050-3470-0809

1.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2. 직접교육 - 간이교육자료, 교육일지, 교육 참석자 명단 다운로드
3. 교육자료를 충분히 읽고 숙지함
4. 교육일지와 교육 참석자 명단 작성
5. 작성한 일지와 명단, 간이교육자료를 3년간 보관